###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(제2차 교육위원회) 2016. 12. 1. (목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##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- 1. 발 의 자 : 이 종 욱 의원 등 7인
-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  - O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2일
  - O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#### 3. 제정이유

○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방식으로 충북교육에 대한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, 충북교육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내용

- 구성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 여 운영(안 제3조)
-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, 이용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·관리(안 제5조)
-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기념품 및 상 품권 제공(안 제6조 2항)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,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소통방식 확대를 통하여 충북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,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.
- 소셜미디어의 일차적 이용목적이 상대방과의 신속한 의사 소통 및 메시지 전달,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호관계 구축에 있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.
-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운영을 체계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